

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11년 5월 19일

국무총리 김황식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
맹형규
(금융위원회 소관)

● 법률 제10690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”를 “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나.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다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라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

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·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,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신용정보 등의 보고)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, 활용기간,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2조제5항 중 “제공하려는 자 및 제공받은 자”를 “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”로, “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”를 “알려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.

제5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,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,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의 설정·유지 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- 가. 법률에서 신용정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(안 제2조제1호).
- 나.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,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).
- 다.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, 활용기간,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,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22조의2, 제52조제3항제4호의2).
- 라.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“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”로 하고,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하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32조제5항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11년 5월 19일

국무총리 김황식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
(금융위원회 소관)

●법률 제10691호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아목을 삭제한다.

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4(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)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